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업무 협약서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6개 관내 소재 대학, 10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 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교육발전특구」란 지자체,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협력사항) 각 협약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및 교육 발전전략 공동연구 및 수립
2. 시범지역 내 지역인재 양성 혁신 시스템 구축 및 공교육 분야 연계지원 확대
3.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기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 추진) 각 협약기관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관한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지역 신청 이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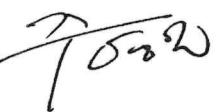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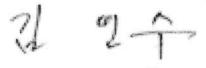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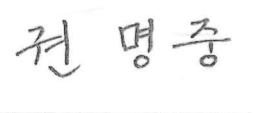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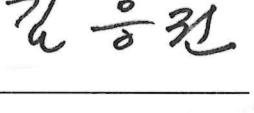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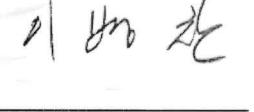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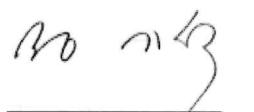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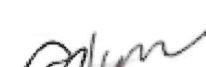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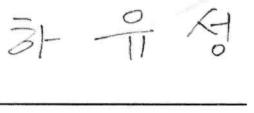
제5조(신의성실) 각 협약기관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효력 발생 및 변경) 본 협약은 날인 한 날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운영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특구 미지정 시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협약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월 11일

	강릉원주대학교	반선섭		원주시	
총장	반선섭		시장	원장수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지원청	
교육감	신경호		교육장	주영일	
	경동대학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총장	전성용		본부장	조남선	
	상지대학교	전성용		대한석탄공사	
총장 직무대행	유만희		기획관리 본부장	김인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한국관광공사	
부총장	천명중		사장 직무대리	서영충	
	한라대학교		국립공원공단		
총장	김응천		이사장	송형근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도로교통공단	
학장	이병찬		이사장	이주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이사장	정기석		원장 직무대리	김진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산림항공본부	
원장	강중구		분부장	고기연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사)강원의료기기 산업협회		
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		회장	최길운	